

[] 휴지
병성감정업무의 [] 폐지 신청서
[] 재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7일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	
	주소			(전화번호:)			
신청기관 (법인)	기관명(법인명)			법인등록번호			
	대표자			생년월일			
	주소			법정동 코드			
		(전화번호:)					
신청사항	폐지·재개일 : 년 월 일			휴지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
	사유						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 년 월 일

신청인
(서명 또는 날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폐지·휴지 신청 시: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 원본 1부 2. 재개 신청 시: 재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 - 나.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 - 다.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.
 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 - 나.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

처 리 절 차

